

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	대표자		업소명	
	등록번호			

변경사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
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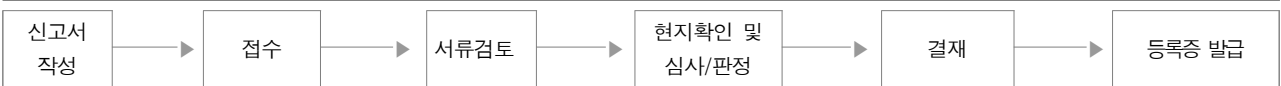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

첨부서류	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원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3항제7호의2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

처리기관 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건강기능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)